

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44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1.

발 의 자 : 김도읍 · 이현승 · 장동혁
인요한 · 구자근 · 박성훈
김희정 · 신동욱 · 김형동
김예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하여 성적서 위조·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·관리 의무를 규정함과 아울러,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에 관한 부정행위 유형을 3가지로 규정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. 또한, 시험 항목의 누락 등 오류가 있는 성적서 발급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부정행위 유형 중 ‘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’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나머지 유형의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내릴 수 없고, 성적서 위조·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·관리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아무런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않으며, 성적서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부정성적서 발급 및 제

공·사용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에 관한 부정행위 유형 3가지 각각에 대하여 인정취소 등 동일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, 성적서 위조·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·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도 아울러 규정하며, 부정성적서 발급 및 제공·사용에 대한 법정형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1항 및 제26조).

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”를 “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0호 중 “제3호”를 “제3호, 제3호의2, 제3호의3 또는 제4호”로 한다.

3의2.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

3의3.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일정기간 유지·관리하지 아니한 경우

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3년”을 “5년”으로, “3천만원”을 “5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3조(인정취소 등) ① 인정기관의 장은 공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정을 취소하거나,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며,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.	제13조(인정취소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3의2.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</u>
<u><신 설></u>	<u>3의3.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일정기간 유지·관리하지 아니한 경우</u>

4. <u>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</u>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5. ~ 9. (생략) 10. <u>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</u> 정에 해당되어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 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·③ (생략) 제26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<u>3년</u> 이 하의 징역 또는 <u>3천만원</u>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 1. ~ 7. (생략)	4. <u>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</u> <u>나를 위반하여</u>----- ----- 5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<u>제3호, 제3호의2, 제3호의3</u> <u>또는 제4호</u>----- ----- -----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26조(벌칙) ----- -----<u>5년</u>----- -----<u>5천만원</u>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
---	---